

『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8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21일

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 석 동

나. 제안이유

- 「건축법」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상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·보완하여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조문 정비 및 전문위원회 설치
(안 제4조, 제5조, 제8조 ~ 제9조의2)
 - 위촉위원 성별 비율 변경
 - 재심의 안건은 소위원회로 개최 가능
 -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분야별전문위원회 신설

- 법령 위임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규정 신설 (안 제15조)
 -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의 도로규정 제외 조항 신설
 -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 내의 건폐율, 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
- 법령 위임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 규정 신설(안 제16조의2)
 -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시 용적률, 높이제한 등을 120%까지 완화
- 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의 확대 및 사용기준 신설(안 제18조)
 - 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강화
 - 중단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예치금 사용기준 신설
- 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사의 현장조사 대행업무 범위 확대(안 제24조)
 -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의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신설
- 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삭제(안 제36조)
-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삭제(안 제41조 ~ 제42조)
 -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으로 삭제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건축법」, 「건축법 시행령」, 「녹색건축물 지원법」
 - 「양성평등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○ 본 조례안은

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·보완하여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(안 제4조, 제5조, 제8조 ~ 제9조의2)건축위원회 성비를 변경하고, 재심의 안건은 소위원회로 개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,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및 분야별전문위원회를 신설토록 규정하였고,
- (안 제15조, 제16조의2)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의 도로규정 제외 조항을 신설하고,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 내의 건폐율,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고,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음.
- (안 제18조)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강화하고, 중단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(안 제24조)건축사의 현장조사 대행업무 범위를 신고건으로 확대
- (안 제36조, 제41조~제42조)건축물의 높이제한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삭제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상위 법령인 「건축법」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련조문 정비 및 현재 시행중인 제도상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,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